M - 42 - 2012

# 천장주행크레인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6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김 용 수

○ 개정자 : 함 광 호

ㅇ 개정자 : 안전연구실

- o 제·개정경과
  - 2000년 6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  - 2000년 8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  - 2010년 11월 기계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  - 2012년 4월 기계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ㅇ 관련규격 및 자료
  - ISO 12480-1: Cranes Safe use Part 1: General
-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 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 (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)
 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(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)
  - 위험기계·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3장(크레인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6 월 20 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천장주행크레인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

## 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 139조,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장크레인 작업시 위험지역 내 출입과 보수·점검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천장주행크레인 본체와 주행레일 지역 내의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.

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계단 또는 사다리 입구 출입문 및 경보장치"라 함은 크레인 운전자 등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크레인 주행레일에 임의 접근하지 못하도록 크레인 승강용 계단이나 사다리의 입구에 설치하는 출입문과 문을 일정시간 내에 닫지 않으면 경보가 발하는 경보장치를 말한다.
  - (나) "접근방지용 스토퍼"라 함은 크레인 주행레일 구간 내에서 작업시 주위의 크레인이 작업구역 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전기식의 스토퍼 (STOPPER)를 말한다.
  - (다) "충돌·협착 예방용 빔 센서"라 함은 크레인 주행시 광선을 쏘아 주행레일 상부에 인체 등이 감지되면 경보음을 울리면서 주행모터 전원을 차단시켜 크레인을 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.

### M - 42 - 2012

- (라) "크레인 본체 출입문 경보장치"라 함은 크레인 본체 상부에 정비·보수 근로자 등 당해 크레인 운전자 외의 근로자가 무단 출입시, 크레인 운전자가 즉시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장치를 말한다.
- (마) "종합경보 수신반"이라 함은 전기식 스토퍼, 빔 센서의 경보와 크레인 본체 상부 출입문 개방 경보를 종합적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운전실 내에 설 치되는 장치를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4. 안전작업방법

- 4.1 작업시의 일반안전
- (1)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준수하여야 하고,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근로자에게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.
- (가) 인양할 하물(荷物)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 작업하지 않는다.
- (나)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용기는 보관함(또는 보관고)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한다
- (다)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·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.
- (라)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 하지 않도록 한다
- (마)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는다.(신호하는 자에 의하 여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

M - 42 - 2012

(2) 동일한 주행로에 병렬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의 수리·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때 에는 감시인을 두고 주행크레인끼리 충돌하거나 주행크레인이 근로자에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충돌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# 4.2 운전실 조작식 천장주행크레인의 운전

- (1) 정격하중, 성능 및 안전장치 기능을 완전히 이해하고 「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」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가 운전한다
- (2) 운전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
- (가) 주행로 및 크레인에 접촉할만한 장애물 존재여부
- (나) 급유 및 볼트, 너트 체결상태
- (다) 기계실, 운전실 등의 레버, 스위치류 정지상태
- (3) 지상에 설치된 승강용 계단이나 사다리의 출입문은 확실히 닫아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킨다
- (4) 출입문용 열쇠는 운전자 본인이 휴대하고 관리한다
- (5) 권과방지장치, 브레이크 및 기타 각 장치에 대해 동작테스트를 실시한 후 운전 개시한다
- (6) 신호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크레인의 운전을 중단하고 신호수에게 재확인 한다
- (7) 운전중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면 즉시 크레인의 주행을 정지하고 그 원인을 파악. 제거한 후 다시 작업한다
- (8) 운전중 갑자기 정전이 될 때는 핸들을 모두 정위치에 놓고 주스위치를 끈 후

M - 42 - 2012

송전이 될 때까지 대기하며, 정전보상 안전장치가 설치된 크레인도 안전장치를 과신하지 말고 마그넷 등에 매단 물체를 지상에 내려 놓는다

- (9) 지상 20~30cm에서 일단정지, 확인 후 물체를 들어 올리며, 정해진 위치에 내려놓기 직전에 일단정지 후 천천히 바닥에 내려 놓는다
- (10) 운전 시작, 물체를 매달고 이동할 때, 진행방향으로 사람이 가고 있을 때, 기타 운전자가 위험을 느낄 때는 경보를 실시한다
- (11) 운전 종료시 트롤리는 운전실 가까이 또는 정해진 위치에 정지하고 혹은 상한 위치에 가깝게 감아 올린다
- 4.3 지상조작식(펜던트 스위치 조작식) 천장주행크레인의 운전
- (1) 운전은 지정된 자만 수행하며, 근로자에게는 작업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교육하여야 한다
- (2) 운전시작 전에 크레인 본체. 주행레일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
- (3) 펜던트 스위치의 케이블, 누름버튼 스위치의 동작상태를 점검한다
- (4) 매단 물체와 함께 이동해야 하므로 보행지역을 정하고 이동범위의 여유공 간 등을 확보한다
- (5) 운전 중에 크레인을 일시 정지하고 줄걸이작업 등을 할 때에는 펜던트 스위치의 조작전원을 끈 후 작업한다
- (6) 크레인의 운전방향과 펜던트 스위치의 방향을 확인하면서 스위치를 조작한다
- (7) 매단 물체와 벽 사이 또는 넘어질 우려가 있는 위치나 밑에서 운전하지 않는다
- (8) 기타 안전작업방법은 운전실 조작식 천장주행크레인에 준 한다

# KOSHA GUIDE M - 42 - 2012

### 4.4 무선조작식 천장주행크레인의 운전

- (1) 운전은 지정된 자만 수행하며, 근로자에게는 작업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교육하여야 한다
- (2) 운전시작 전에 크레인 본체, 주행레일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
- (3) 제어장치의 누름버튼 스위치, 핸들 스위치 등의 동작상태를 확인하며, 이때 의 전원용 키스위치는 꺼짐 상태로 한다.
- (4) 원칙적으로 걸어가면서 운전하지 않으며, 부득이 운전하면서 걸어가는 경우에는 안전통로를 사용한다.
- (5) 단독작업으로 운전자가 줄걸이작업을 할 때 제어장치의 스위치를 꺼짐 상태로 둔다
- (6) 운전 중 매단 물체의 흔들림, 다른 물체의 접촉에 의한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한 피신거리를 확보한다
- (7) 제어장치는 항상 운전자가 소지해야 하며 작업종료, 휴식시에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
- (8) 기타 안전작업방법은 운전실 조작식 천장주행크레인에 준 한다

#### 4.5 점검 · 보수작업

- (1) 작업내용과 일정 등을 해당 크레인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에 협의 또는 통보하고 작업시작 직전에 재확인한다
- (2) 해당 크레인의 동력전원을 차단한 후 시건장치를 하고 "점검 중 조작금지" 등의 표지를 게시한다
- (3) 공사범위 내의 지상구역에는 위험구역임을 표시하여 관계자외 출입을

# KOSHA GUIDE M - 42 - 2012

금지시킨다

- (4) 승강용 계단이나 사다리의 출입문 열쇠는 크레인 운전자가 소지하고 있으므로 개방을 의뢰한다
- (5) 통로(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) 또는 주행궤도상에서 정비·보수·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인접크레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구역 경계선에서 5~10m 바깥 지역에 전기식 리미트 스위치용 터치바를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한다
- (6) 고소에서의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그네식 안전대를 착용하고 로 프, 훅, 피봇클램프 등을 이용, 걸이대에 체결 후 작업한다

## 5. 안전설비 설치기준

- 5.1 계단 또는 사다리 입구 출입문 및 경보장치
  - (1) 지상에서 크레인 또는 주행레일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 또는 사다리 입구에 시건장치가 있는 출입문을 설치하되, 출입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며, 내부에서는 임의로 개방할 수 있으나 외부에서는 당해 출입문용 열쇠로만 열 수 있는 구조가 좋다
  - (2) 출입구 상부 또는 잘 볼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문 개방 1차 경고용 경보등을 설치한다
  - (가) 문을 열면 청색 경보등이 켜지며 문을 닫으면 청색 경보등이 꺼짐
  - (나) 문을 열어두면 30초 후 청색 경보등에서 적색 경보등으로 전환되며 문을 닫으면 꺼짐
  - (3) 운전석 전면의 공장 기둥에 출입문 개방 경고용 경보등과 사이렌을 설치한다
  - (가) 문을 열어두면 30초 후 경보등이 켜지며 사이렌이 울림

### M - 42 - 2012

- (나) 문을 닫으면 경보등과 사이렌이 꺼짐
- (다) 경보등은 2개소 이상, 사이렌은 1개소 이상 설치
- 5.2 크레인 본체 출입문 및 경보장치
  - (1) 크레인 본체 위 통로 끝단부에 출입문을 설치한다
  - (2) 출입문을 열면 운전실 내부에서 경보가 작동되도록 한다.
  - (가) 문을 열면 경보등이 켜지며 경보음을 발함
  - (나) 문을 닫으면 경보등과 경보음이 꺼짐
- 5.3 접근 방지용 스토퍼
  - (1) 전기적 스토퍼는 전기식 리미트 스위치와 이동용 자석식 터치바로 구성한다
  - (2) 전기식 리미트 스위치는 크레인 새들부 좌우, 전후단에 각각 1개씩 설치한다.
  - (3) 자석식 터치바는 평철 종류와 자석을 사용하여(규격 : 폭 5cm, 길이 50cm 정도) 크레인 레일 측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
  - (4) 전기식 리미트 스위치가 자석식 터치바에 접촉되면 운전실 내부의 경보장치가 작동되며 크레인의 주행 운전이 정지되도록 연동시킨다.
  - (5) 자석식 터치바는 크레인의 주행 브레이크 동작후 멈춤거리를 고려하여 설치 한다
- 5.4 충돌ㆍ협착예방용 빔 센서
  - (1) 빔 센서는 새들부 좌우, 전후 단에 각각 1개씩 설치하되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한다

### M - 42 - 2012

- (가) 빔 폭은 공장 기둥 등과 간섭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축소 조정
- (나) 최대 감지거리가 4m 이상이 되는 빔 센서를 설치
- (2) 빔 센서에 장애물이 감지되면 운전실 내부의 경보장치가 작동하면서 크레 인 주행운전이 정지되도록 연동시킨다.

#### 5.5 종합경보 수신반

- (1) 종합경보 수신반은 크레인 운전실 내부에 설치한다.
- (2)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.
- (3) 크레인 본체 출입문 개방경보, 전기식 스토퍼 작동경보, 빔 센서 감지경보의 세가지 경보를 동시에 처리한다.
- (4) 경보등이 켜지며 경보음이 동시에 울리도록 하고 경보등은 녹, 청, 적색의 세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보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용도를 표기한다.

### 5.6 추락방지용 안전대 걸이

- (1) 착용자의 추락강도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안전대 걸이를 공장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설치하여 안전그네식 안전대를 쉽게 걸 수 있도록 한다.
- (2) 로프, 피봇클램프, 턴버클 등 이동 설치가 간편하도록 구성한다.
- (3) 와이어로프는 직경 5mm 이상, 섬유로프는 직경 20mm 이상을 사용한다.
- (4) 턴버클을 사용하여 와이어로프의 장력이 유지되도록 조정한다.